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2월 1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
제5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- 가. 제안이유
 - 공동체 생태계 확장 요구와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(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)
 -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 추가(안 제15조제2항 신설)
 -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 추가(안 제15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신설)
 - 사회적경제 지원 교육 및 홍보 규정 추가(안 제25조제4호 및 제5호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으로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마을과 사회적경제는 지난 10년간 각 파트별로 성장하였으며 전환기를 맞이하여 양 파트를 균형 있게 융합하여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하고자 하여 발의한 안건으로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합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사업발굴 및 그 시행에 따른 수시 점검이 확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